

## 구정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

질문의원：李 啓 壇 議員

답변자：都市局長 沈大燮

질문내용	<p>(1) 대연동 토지 무단형질변경 사후 조치 내역          (2) 동명문화학원 무단형질 변경에 대한 고발 조치 내역</p>
답 변	<p>(제1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지는 대연공원 예정부지내로서 오래전부터 밭으로 사용되어 왔으며, '90. 9월 상기위치에 콘테이너 하우스(경량 철골조)를 설치하고 양미늄샷시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91. 1. 7 약식명령(사건90 고약 40028)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300,000원을 처분한 적이 있음.</li> <li>○ 토지 관련 불법행위 일제조사시에 재적발되어 91. 10. 26자 남부서에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91. 12. 14일자 콘테이너 하우스및 알미늄샷시를 자진철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li> <li>○ 첨부：철거 전·후 사진 매.</li> </ul>

답    변	(제2항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명문화학원은 77. 8. 4 부산직할시 고시 제1608호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 학교로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었습니다.</li> <li>○ 고시내용을 보면 부산시남구 용당동 산18번지 일원으로 총부지면적은 346,953㎡ (104,593평)이며, 학교건립을 위해 85. 11. 19 부산직할시 제282호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득하여 부지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교사를 전립하여 학생수업중에 있으며, 그외부지도 동명학원측의 연차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부지조성중에 있습니다.</li> <li>○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명학원 무단훼손 과다고발전에 대하여는 91. 10. 18 내무부, 부산직할시감사실 및 우리구 담당실무자등으로 구성된 불법토지관련 일제조사시, 무단훼손지를 적발하고 조사하였던바, 훼손지는 학교시설 결정구역내에 속하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업시행하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위반되어 사직당국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.</li> <li>○ 동전의 고발과정에서 동명문화학원측의 입회하에 91. 10. 19 우리구 도시정비과 직원이 현지측량 하였으며 당시면적이 5,200㎡ 였으나 91. 8. 23 태풍 “글래디스”호의 영향으로 사면일부가 유실된 것이 확인되어 유실부분인 1,160㎡는 고발면적에서 제외시키고 4,040㎡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.</li> <li>○ 뒤이어 본건은 학원측으로부터 91. 10. 28일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91. 12. 3일 부산직할시에 사업변경허가 전달하였습니다.</li> </ul>